
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의안 번호	20279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6. 7.
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가. 다음 3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
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.

건명	의안번호	발의자	발의일	전체회의 상정일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	2203067	서미화	2024.8.22.	2024.11.14.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	2216084	김윤	2026.1.15.	2026.3.10.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	2216209	안상훈	2026.1.21.	2026.3.10.

나.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
일정으로 심사한 결과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
마련함.

건 명	의안번호	소위원회 심사일정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	2203067	제434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(2026.4.28.)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	2216084	제434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(2026.4.28.)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	2216209	제434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(2026.4.28.)

라. 제434회국회(임시회·폐회중)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(2026.4.29.)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위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심뇌혈관질환 중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명시하고,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추가하며,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,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, 심뇌혈관질환 전문인력의 양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중앙·권역·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가. 심뇌혈관질환중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명시함(안 제2조제1호).

나.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,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추가함(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3호).

다.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도록 함(안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).

라.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간을 5년으로 하고, 지정 기준·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과 아울러, 사업 미이행 또는 지도·감독 불이행 시 시정명령 또는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함(안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).

마.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시 진료권별로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사업을 중증·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로 명확히 함(안 제13조제1항).

바.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시 진료권별로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을 중등증·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로 명확히 함(안 제13조의2 신설).

사. 심뇌혈관질환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역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「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에 따른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내에 심뇌혈관 진료협력

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의3 신설).

아.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제1항제6호 신설).
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가목 중 “심혈관질환”을 각각 “심장혈관질환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

4. “진료권”이란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하여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을 말한다.

제4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이전의 종합계획에 관한 분석·평가

제8조제1항 중 “보건복지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예방·치료·재활”을 “예방·진단·치료·재활”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 중 “보건복지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보건복지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전단 중 “질병관리청장”을 “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심뇌혈관질환”을 각각 “질병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질병관리청장”을 “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질병관리청장”을 “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기간은 5년으로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·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2.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

3. 제17조에 따른 지도·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
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⑤ 그 밖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의 기준·방법·절차,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의 제목 중 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”를 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”를 “진료권별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중증 응급”을 “중증·응급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“권역 또는 지역 내”를 각각 “권역 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”를 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”를 각각 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”를 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”로 한다.

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중에서 진료권별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
1. 중등증·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
2.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, 진료 및 재활 등에 관한 연구
3.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·분석 및 제공
4.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

5.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

② 지역심뇌혈관질환관리센터의 평가·재지정·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”는 “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”로 본다.

제13조의3(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 구축·운영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심뇌혈관질환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진료권 내에서 지역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「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에 따른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내에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는 「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에 따른 운영 기준에 따르되,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구성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·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제1항제5호 중 “제12조 및 제13조”를 “제12조, 제13조 및 제13조의2”로 한다.

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1호 중 “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”을 “제12조제1항,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시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.

제18조 중 “제13조제5항”을 “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5항(제13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4호, 제13조, 제13조의2, 제13조의3,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16조(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)의 개정규정은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제3조(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제13조의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.

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바목 중 “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”를 “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심뇌혈관질환”이란 <u>심혈관 질환</u> ,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. 가. 심근경색 등 <u>심혈관질환</u> 나. ~ 바. (생략) <u><신설></u> 2.·3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<u>심장혈관질환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가. ----- <u>심장혈관질환</u> 나. ~ 바. (현행과 같음) 사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2.·3. (현행과 같음) 4. “진료권”이란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하여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을 말한다.
제4조(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5. (생략)	제4조(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6. (생 략)

③ ~ ⑥ (생 략)

제8조(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) ①

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,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·개발 사업(이하 “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”이라 한다)을 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.

1.·2. (생 략)

3. 심뇌혈관질환 예방·치료·재활을 위한 중개·임상 연구

4. ~ 6. (생 략)

7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

6. 이전의 종합계획에 관한 분석·평가

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) ①

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예방·진단·치료·재활-----

4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---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-----

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-----

진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

제9조(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)

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요인과 심뇌혈관질환의 발생, 진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·분석하여 심뇌혈관질환 발생률·재발률,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, 유병력자의 재활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·통계사업(이하 “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”이라 한다)을 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「통계법」을 준용하며,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 정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

제9조(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)

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-----

[illegible]

② _____

조사통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.

1. 심뇌혈관질환 등록통계사업

2. 심뇌혈관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코호트 조사

3.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관련
통계를 산출하기 위하여 질병
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
하는 사업

③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·치료하는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·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

1. 질병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심
뇌혈관질환 -----

2. 질병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심
뇌혈관질환 -----

3. -----
-----보건
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-----

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
리청장-----

라야 한다.

④ (생 략)

제12조(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) ① (생 략)

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의 기준·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기간은 5년으로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·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2.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

3. 제17조에 따른 지도·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
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

<u><신 설></u> 제13조(<u>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</u>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<u>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</u>를 지정할 수 있다. 1. <u>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자</u>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2. <u>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</u> 관련 예방,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·연구 3. <u>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</u> 관련 자료의 수집·분석 및 제공 4. <u>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</u>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. (생략)	<u>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</u> ⑤ 그 밖에 <u>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의 기준·방법·절차,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</u>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제13조(<u>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</u>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진료 <u>권별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</u>를-----. 1. <u>중증·응급</u>----- 2. <u>권역 내</u>----- 3. <u>권역 내</u>----- 4. <u>권역 내</u>----- 5. (현행과 같음)
--	---

② (생 략)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3년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·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~ 4. (생 략)

⑥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·재지정의 기준·방법·절차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-----.

④ -----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-----

-----.

⑤ -----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⑥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-----

-----.

제13조의2(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

의 지정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중에서 진료권별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
1. 중등증·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
2.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, 진료 및 재활 등에 관한 연구
3.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·분석 및 제공
4.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
5.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

② 지역심뇌혈관질환관리센터의 평가·재지정·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

<신 설>

한다. 이 경우 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”는 “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”로 본다.

제13조의3(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 구축·운영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심뇌혈관질환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진료권 내에서 지역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「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에 따른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내에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는 「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에 따른 운영기준에 따르되,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구성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

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1. ~ 4. (생략) 5.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심 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에 관 한 업무 6. 7. (생략) ② ~ ④ (생략) 제16조(비용의 지원)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1.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시설·인력·장비 등을 확 충하는 데 드는 비용 2. ~ 5. (생략) <신설> <신설>	----- ----- --.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제12조, 제13조 및 제13조의 2----- ----- 6. 7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16조(비용의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. 1. -----제12조 제1항, 제13조제1항 및 제13 조의2제1항----- ----- ----- 2. ~ 5. (현행과 같음) 6.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
--	---

제18조(청문) 보건복지부장관은 <u>제13조제5항</u>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.	<u>다른 비용지원시 제13조제2항</u> <u>및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평</u> <u>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.</u> 제18조(청문) ----- <u>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5항</u> <u>(제13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</u> <u>경우를 포함한다)</u>----- ----- -----.
--	--